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2. 19.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2. 3. 안미자 의원 외 8명

나. 회부일자: 2025. 2. 4.

다. 상정일자: 제273회 임시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2025. 2. 19.)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안미자 의원】

가. 제안이유

현행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에 대해 경로 우대 감면을 시행할 경우 전액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산 등의 이유로 경로 우대 감면은 전체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우리 구 예산 실정에 맞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의 경로 우대 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어르신들의 문화생활 여건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료 감면을 지원(안 제10조제5항)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 우대자 감면 비율을 조정(전액감면→

50%)(〔별표2〕)

다. 참고사항

- 「노인복지법」 제26조
- 입법예고 : 2025. 1. 23. ~ 2025. 1. 31. 결과: 의견 없음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3. 검토보고(전문위원 유준상)

① 조례의 개정 취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미자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현행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에 대해 경로 우대 감면을 시행할 경우 전액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산 등의 이유로 경로 우대 감면은 전체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우리 구 예산 실정에 맞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의 경로 우대 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어르신들의 문화생활 여건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② 주요 개정 내용

- 제10조 제5항에서 “사용료등을”이라는 표현을 “사용료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로 변경함으로써, 자치회관 운영 수입 징수 시 예산 범위 내에서의 집행 원칙을 명시하고자 함.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 우대자 감면 비율을 조정(전액감면→50%)(〔별표2〕)함.

③ 개정 내용 검토

○ 용어 명료화

- 기존 표현 “사용료등을”은 다소 모호하여, 사용료 징수 및 집행과 관련한 재원 관리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을 볼 때 “사용료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로의 개정은 자치회관 운영 관련 사용료 징수 및 집행이 구체적으로 예산한도 내에서 이루어짐을 명시하여, 재정건전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됨.

○ 실무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 범위를 의미하는지(예산 편성 시 산출된 한도 등)를 내부 지침 또는 별도 운영 매뉴얼을 통해 명확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음.

○ 타자치구 자치회관 감면현황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9개 자치구가 65세 이상 50% 감면¹⁾으로 운영중에 있음을 볼 때[별표 2 참조], 작년에 먼저 50% 감면을 시행 중인 2개동(도화동, 용강동) 기준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것이 민원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낮고 가장 적합한 기준으로 판단됨.

○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9개 자치구가 65세 이상 50% 감면으로 운영중에 있으며, 작년에 먼저 50% 감면을 시행 중인 2개동(도화동, 용강동) 기준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것이 민원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낮기에 가장 적합한 기준으로 사

1) 영등포구, 용산구, 종로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강서구, 서초구

료되며, 자치회관 운영에 있어 사용료 징수와 관련된 재정 집행의 한계를 명시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 할 수 있는 긍정적 조치로 판단됨.

- 다만, 관련 규정 간의 연계성 및 실무 적용에 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며, 시행 후 모니터링을 통한 효과 분석과 피드백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별표 1] 관계 법령

「노인복지법」

[시행 2024. 11. 1.] [법률 제19814호, 2023. 10. 31., 타법개정]

제26조(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별표 2]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 우대자 감면 현황

(25년 기준)

연번	자치구명	조례상 기준	실제 감면 현황	강사로 지원 예산(천원)
1	마 포 구	100% 감면	미 실시	138,000
2	중 구	100% 감면 (구민 1인 2강좌 제한)	-	200,000
3	관 악 구	100% 감면	미 실시	133,200
4	영 등 포 구	50% 이내 감면	대상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183,224
5	용 산 구	50% 감면(65세~74세), 100% 감면(75세 이상) (구민 1인 1강좌 제한)	-	492,672
6	종 로 구	50% 감면 (구민 1인 2강좌 제한)	-	200,000
7	성 동 구	50% 감면	-	126,480
8	광 진 구	50% 감면 (구민 1인 1강좌 제한)	-	91,240
9	동 대 문 구	50% 감면 (1인 2강좌 제한)	-	120,000
10	중 랑 구	50% 감면 (1인 2강좌 제한)	-	204,000
11	도 봉 구	50% 감면	-	276,000
12	은 평 구	50% 감면 (1인 2강좌 제한)	-	278,250
13	서 대 문 구	50% 감면 (구민)	-	277,200
14	양 천 구	수강생 전원이 60세 이상으로 구성된 강좌 100% 감면	-	86,400
		50% 이하 감면 (구민)	일부 동 감면	
15	구 로 구	50% 감면 (1인 2강좌 제한)	-	332,000
16	금 천 구	50% 감면 (구민 1인 1강좌 제한)	-	570,502
17	동 작 구	50% 감면	-	422,000

연번	자치구명	조례상 기준	실제 감면 현황	강사로 지원 예산(천원)
18	강 남 구	50% 감면 (1인 2강좌 제한)	대부분 문화센터로 운영	60,000
19	강 동 구	50% 감면	-	372,096
20	송 파 구	50% 이내 감면 (1인 2강좌 제한)	25% 이내 감면	126,360
21	강 서 구	50% 감면	미실시	102,120
22	서 초 구	50% 감면	미실시	86,000
23	강 북 구	30% 감면 (70세 이상)	-	313,152
24	노 원 구	30% 이내 감면 (1인 1강좌 제한)	-	미정
25	성 북 구	20% 감면	-	175,200